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한해 발생 시 농작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국·시비 보조 및 구비로 구입한 양수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88년도에 제정된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가
- 대부절차가 복잡하고,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담 등으로 한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의 이용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어, 행정규제 정비 일환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 운영코자 함.

2. 주요골자

- 대부절차에 있어 대부신청서 외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신설(안 제5조)
- 양수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조항을 삭제(안 제11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한해 발생 시 농작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양수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대부절차 및 사용료 부담 등으로 한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중 부담을 주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원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대부절차에 있어 대부신청서 외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구청장의 권한을 동장이 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행정의 신속성과 서류의 간소화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적합하다고 하겠으며, 조례안 제11조 “사용료 삭제” 조항은 한해 발생으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양수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삭제한 내용이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